

Q

혹서기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수(음용수)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희 현장은 매월 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는데 기청구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금월에 청구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4월에 사용한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4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7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4월분 항목이 포함되어도 되는지요.)

A

1. 혹서기 생수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생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가 귀 공사현장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비목중 사진 및 인화료를 안전관련외 다른 용도(공사성 등)로 인화했을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관리비라 함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은 산업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구체적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노동부고시 제2002-15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작업자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비 등(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

저희 사업장은 60년대 신축된 건축물로서 당시의 건축법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시공되었습니
다. 그러나 사업장내 계단 등 난간대의 높이는 약 80센티미터 정도로 현 산업법 기준(90센티미
터 이상)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에 60년대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축된 건축물이
80년도 이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건축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이 서로 다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중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상부난간대 · 중간난간대 ·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
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라.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
할 것
- 마.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바.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사.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Q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기성공정율이란 명확하게 '집행기성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적공정율'을
의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성공정율이라 함은 전체공사에 대한 기 시공 완료한 공사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수령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나 총공사비에 대한 기 완료한 부분의 공사비 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
다고 사료됩니다. 